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43
----------	-------

발의연월일 : 2026. 6. 9.

발 의 자 : 김재섭 · 최수진 · 김미애  
서천호 · 이헌승 · 조경태  
정성국 · 권영세 · 박수민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할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할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여 입학할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

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21조, 제27조 및 제3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허용하지 않는 차별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 ③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 또는 배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수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에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 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